

안전관리(3급)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안전관리(3급)				
구분	고용형태	직군	직급		
2101	정규직	행정직	3급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23 환경·에너지·안전	06 산업안전보건	01 산업안전관리	00 산업안전관리공통직무
		23 환경·에너지·안전	06 산업안전보건	02 산업보건관리	01 산업보건관리
		23 환경·에너지·안전	06 산업안전보건	02 산업보건관리	02 근로자작업환경관리
주요업무	업무구분	업무내용			
	산업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안전 관련 법령/매뉴얼 제·개정 ○ 안전경영시스템 인증·관리 ○ 위험성 평가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 안전 공시 등 안전관리 대관업무 및 대응 ○ 안전 조직구성, 이행사항 지도점검 ○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 근로자 작업환경 관리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관리공통직무) 안전 기준에 따른 평가방법, 관련법령/기준/지침에 대한 지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에 대한 지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또는 기록 문서에 대한 지식,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서의 문서의 종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관련 법령/규정/지침, 산업자해가 발생한 작업에 관한 지식, 업종에 따른 안전 지식,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안전계획서 작성법, 안전관리규정, 중대재해처벌법, 평가분석기법 관련 지식, 재해통계 분석기법, 비상상황 대응 기준에 대한 지식, 관계법령/기준/지침에 따른 협력업체와의 협력사항에 대한 규정, 협력업체 업무 위험성에 대한 지식, 협력업체 기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 (근로자작업환경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규정,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지식,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실내공질 관리법, 유해요인별 유해·위험성 지식, 작업환경 평가 및 관리 기술에 관한 지식, 특수건강진단 결과서에 관한 지식, 유해인자별 관리프로그램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관리공통직무) 안전기준에 따른 점검결과 평가능력, 관련 법률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유해·위험 요인을 선정 능력, 안전관리 방침에 따른 목표 수립 능력, 산업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산출 능력, 재해 통계 분석 기술, 재해 사례 분석 기술, 관련 법령/기준/지침에 따라 협력 업체와 협력 또는 지원 할 수 있는 능력 ○ (근로자작업환경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해석, 법정 유해인자 선별능력,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 기술, 작업내용 및 조사결과 분석 능력, 안전보건개선에 따른 심리상태분석, 유해인자 파악능력, 안전보건상의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적정 건강보호프로그램 선정 및 적용 능력 				
능력(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관리공통직무) 객관적 기준에 의한 안전점검계획 수립 의지, 안전기준 준수 의지, 사고예방 의지,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의지, 분석적 사고를 견지하려는 태도,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적 사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태도, 객관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태도, 사전에 예방하려는 태도,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동등하게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 (근로자작업환경관리) 유해요인 조사를 위한 통합적 사고, 작업공정에 대한 주의깊은 관찰력, 책임감 있는 태도, 안전사항 준수, 원활한 의사소통, 종합적인 분석력과 사고 필요 				
직업기초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공정성 				
기본자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가·공공·민간기관에서 8년이상 경력을 가진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국가·공공·민간기관에서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기본자격 외 필수자격 (전공, 경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 안전관리자의 자격 1,2,4,5항 중 1개 이상 충족자 				
참고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ww.ncs.go.kr 				